

CASES

명예훼손 사례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 어뷰징(abusing)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 정정보도문 게재

A인터넷신문은 종합격투기 관련 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인 유명 가수 B가 대회 도중 부상을 입은 선수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10여회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유명 가수 B는 해당 선수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같은 보도가 짧은 시간 안에 수차례 보도되어 피해가 더욱 크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정대상기사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심리 다음 날 정정보도문이 게재됐다.

망자 소식에 신중치 못했던 방송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C방송사는 2014년 사망한 신청인 아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신청인 아들이 한 겨울에 안전장비도 없이 여름장화에 반팔 티셔츠 하나에 우비만 입고 산에 올라가서 작업했고, 이단으로 취급되는 특정 종교 소속의 신청인과 주변인들은 사람이 죽어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수사기관에 사망한 아들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 아들이 겨울옷에 등산용 겨울장화를 신고 그 위에 우의를 걸친 채 작업했으며, 아들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과 지인들이 전혀 슬퍼하지 않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수사기관에 수사하지 않도록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중재부는 망자에 관한 보도는 신중해야 함에도 조정대상기사는 부모가 종교에 매몰돼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해 유가족에게 큰 상심을 안겼다고 판단한 뒤, 피해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상의 피해구제보도와는 달리 프로그램 시작과 말미에 정정보도를 방송하도록 하고, C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일주일 간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상징적인 유감의 표시로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이끌었다.

양측의 과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중재부, 반론보도 결정

D신문사는 무급 인턴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사설에서 신청인 회사가 무급 인턴을 뽑아 정규 근로와 유사한 상시적 업무를 시킨다고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인턴 프로그램은 인턴사원제가 아닌 교육 프로그램이고, 사설에서 인턴 담당 업무라고 언급한 업무는 소속 부서의 업무로써 인턴 참여 학생에게 주어지는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참고한 신청인의 인턴 모집공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으나 피신청인 또한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사설을 작성한 점이 인정 되는 바 양측의 과실을 균형 있게 고려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범죄혐의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 기사삭제

B방송사는 어린이집 교사가 현장학습에서 몸에 좋은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벌레를 먹이려 했고, 아이가 새치기를 했다면 막대기로 머리를 마구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교사가 아이에게 벌레를 먹이려 한 적이 없고, 피신청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에게 별도의 확인 없이 학부모의 일방적인 제보에 의한 방송을 했다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정적인 제목 하에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해당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신청인의 반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후, 신청인 측의 최종의견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기사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